

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8월 말까지

- 국세청, 2022. 8

- (개요) '22년 상반기(1월~6월)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*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(수)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* (안내대상) 상장법인 대주주 등 7,042명
- (신고안내)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8월 2일(화)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(K-OTC)*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(중소·중견외)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*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
 -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,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
 -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(다수 회전자, 수신거부 등)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
- (신고방법)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(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)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
 -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(세정지원)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
1

'22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입니다.

- (신고의무) '22년 상반기(1월~6월)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8월 31일(수)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

-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*에게 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
 - * K-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
- '21년 말(12월 결산법인 기준)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
 - '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, '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.

|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|

구 분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
지 분 율	1% 이상	2% 이상	4% 이상
시가총액	10억 원 이상		

- (안내대상) '22년 상반기(1월~6월)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(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)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
| 신고안내문 발송 일정 |

8. 2.	8. 3.	8. 8.
카카오톡	문자메시지	종이 안내문*

*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,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

2 편리한 전자신고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.

- (홈택스등 이용 간소화) 다양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- 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(카카오톡, 페이코, 통신사 페스, 삼성페스 등), 지문인식·얼굴인식(아이폰)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.
- (신고도움자료 제공)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홈택스·손택스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- (주식 양도신고도우미) 게시된 신고서 작성 사례,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(거래내역 제공)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(5개년)을 증권사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
 - (사업자번호 조회서비스) 신고서 항목 중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(종목코드)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3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(세정지원)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 - (연장기한)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,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.
 - (신청방법)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,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홈택스 > 신청/제출 >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>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
 손택스 > 신청/제출 > 세무서류신청-공통분야 >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

4 성실신고 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.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,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.
 - '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'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참고 1 -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

구분	내용
과세범위	· (국내) 상장주식 중 대주주*(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) 및 비상장주식 거래 · (국외)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,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* 코스피(1%·10억 원 이상), 코스닥(2%·10억 원 이상), 코넥스(4%·10억 원 이상)
소득통산	· 국내·국외주식 손익통산('20. 1. 1. 이후 양도분) ·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
양도가액	·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
필요경비	· (취득가액)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· (양도비등) 증권사 수수료 등
기본공제	· 국내·국외주식 통산*하여 연 250만 원 * 국내·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



세 율	· 국내주식: 10% ~ 30%		
	구분		
	중소기업	소액주주	10%
		대주주	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%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%
	중소기업 외	소액주주	20%
대주주 1년 이상 보유		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%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%	
대주주 1년 미만 보유		30%	
· 국외주식: 20% (중소기업 주식은 10%)			
신고납부	· 국내주식: 예정 및 확정 신고·납부 · 국외주식: 확정 신고·납부로 종결(예정신고 없음)		

참고 2 -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

1.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?

- ①상장법인 대주주(장내·외 불문) ②상장법인 소액주주(장외거래만) ③비상장법인 주주(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)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'22년 상반기(1월~6월)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.
-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-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.

《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》

구분	신고기한	(예)양도일 '22. 3. 16.
상장주식·비상장주식	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	신고기한: '22. 8. 31.
특정주식·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	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	신고기한: '22. 5. 31.
국외주식, 파생상품	확정신고(예정신고 제외)	신고기한: '23. 5. 31.

2.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?

-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*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

- * (최대주주인 경우)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배우자,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, 경영지배관계 법인
(최대주주가 아닌 경우)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경영지배관계 법인

(‘20.4.1. 이후~ 현재)

구분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
지분율	1% 이상	2% 이상	4% 이상
시가총액	10억 원 이상 (공통)		

-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.

3.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?

-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(K-OTC)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,
 - 장외거래, 비상장주식 거래(한국장외시장 외)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?

- 한국장외시장(K-OTC)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,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.
- 한국장외시장(K-OTC) 대주주 요건(지분율 4%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)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.

5.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?

-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나,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.

6.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?

- 홈택스·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(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)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가 가능합니다.

**7.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?**

-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(증권사)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·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8.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(1월~6월)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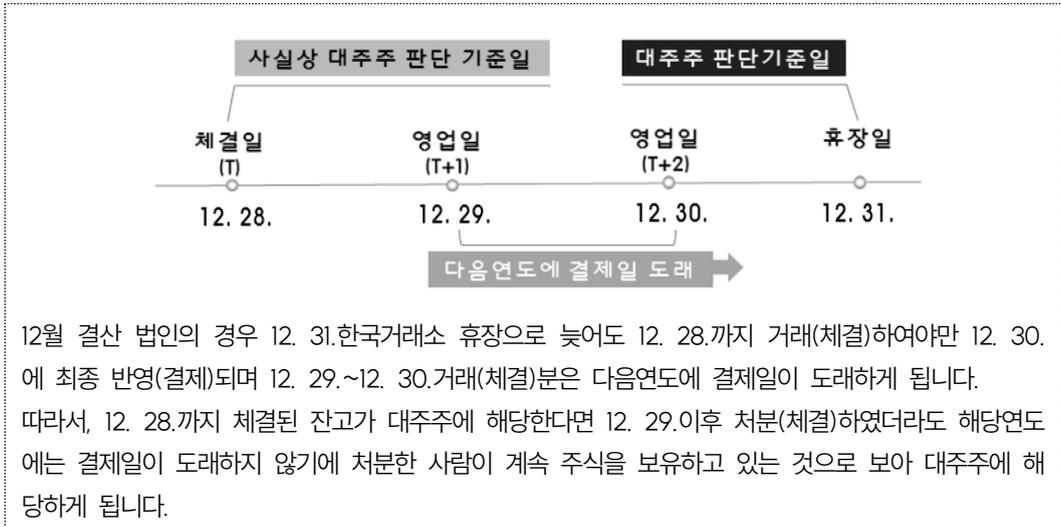
-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.

9. 2022년 상반기(1월~6월)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?

- 2020. 1. 1.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(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)에 신고해야 합니다.
 -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·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0.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?

-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,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(T+2, 한국거래소 영업일)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.



11.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-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2.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?

- 홈택스를 통하여(본인인증 후 접속)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
 - * 홈택스 로그인 > 신고·납부 > 양도소득세 > 신고도움서비스(주식 등 거래내역)
 - ☞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 및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
 - 다만,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함
- 또한, 본인 이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.

13. 홈택스(손택스)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?

- 신고는 매일 06:00~24:00, 납부는 07:00~23:30까지 가능함
 - 다만,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 가능



14.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?

-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-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
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%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

참고 3 -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 방법 안내

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

구 분	주요 내용
전자신고 (PC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자: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○ 접근 방법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※ 접속 후 '신고/납부'→'세금신고-양도소득세'→'예정신고 작성' 선택 ○ 이용 시간: 매일 06:00 - 24:00(~8. 31.) ○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, 누리집, 유튜브 참조 ※ (홈택스) 신고/납부 > 양도소득세 > 주식양도 신고도우미
우편신고 · 방문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 기한: '22. 8. 31.(수) 18:00까지 ○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

②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

구 분	주요 내용
홈택스 (PC, 모바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세청 홈택스 납부(공동인증서 접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※ '신고/납부'→'세금납부'→'국세납부'→'납부할 세액 조회납부' 선택 -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※ '신고/납부'→'세금납부'→'국세납부'→'자진납부' 선택 ○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납부 ○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*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* 납부세액의 0.8%(체크카드는 0.5%) ○ 페이코, 앱카드*, 삼성·카카오·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

	<p>* 6개 카드사(국민·농협·롯데·삼성·신한·현대)</p> <p>◦ 납부시간: 07:00-23:30(연중 무휴)</p>
금융결제원 (인터넷지로, 카드로택스)	<p>◦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(www.giro.or.kr, www.cardrotax.or.kr)</p> <p>◦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(납세자 정보, 세목, 납부금액 등)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</p> <p>◦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납부</p> <p>◦ 납부시간: 00:30-23:30(연중 무휴)</p> <p>*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</p>
금융기관 (수납창구, CD/ATM, 인터넷뱅킹 등)	<p>◦ (수납창구) 현금, 계좌이체, 가상계좌 납부</p> <p>◦ (CD/ATM)*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가상계좌 납부</p> <p>* 분할납부 불가,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</p> <p>◦ (인터넷뱅킹) 계좌이체, 가상계좌 납부</p> <p>◦ (ARS) 계좌이체, 가상계좌 납부</p> <p>◦ (공과금수납기)* 계좌이체 납부</p> <p>*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</p>
세무서 (무인카드 수납기)	<p>◦ (무인카드수납기)* 신용카드 납부</p> <p>*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</p>

참고 4 -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

1.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

- (세법정보)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및 대주주의 범위, 취득·양도 시기 등의 정

2. 신고서 작성사례

- (작성사례) 실제 사례를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

3. 자기검증용 검토서

- (자기검증) 대주주 요건, 중소기업 요건 검토 및 양도세율 적용 검토 서식을 점검표로 제공



4. 자주 묻는 질문

(질문제공)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답변과 함께 제공

5. 신고오류사례

(오류사례) 반복해서 발견되는 오류 및 무신고 사례를 제공

6. 전자신고가이드

(전자신고) 홈택스·손택스상의 신고 흐름을 안내

참고 5 - 사업자번호 자동조회·채움 서비스

- 상장주식 종목명 또는 주권종목코드로 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신고서 입력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
- ①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(필수입력항목) 입력
- ②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상장법인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
[주권종목코드 조회] 메뉴 선택 > 종목코드 또는 종목명 입력 조회하기 > 목록에서 더블 클릭으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
참고 6 -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

구분	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
세율 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%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*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('20.6.11.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)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*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www.ftc.go.kr)에서 확인 가능 ○ 소득세법 상 대주주*에 해당함에도 10%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주주 : 20~25%,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: 30% ☞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%, 3억 원 초과분 25% 세율 적용 (중소기업 : '20.1.1.이후,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: '18.1.1.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 ○ 특정주식,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(상장 여부 불문)에 해당하는 경우

구분	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
	<p>6%~45%의 누진세율*을 적용 대상이나 일반 주식세율(10%, 20%, 25%, 30%)을 적용하여 신고</p> <p>*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%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%p 더한 세율 적용</p> <p>○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%를 적용하여야 하나 20~25% 세율로 신고</p>
대주주 세율	<p>○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·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·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%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·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(1년 이상 보유주식)</p> <p>* '22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.5억 원에 대해 20%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'22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%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(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)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</p> <p>○ '20.1.1.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(1년이상 보유)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(20~25%)을 적용하여야 하나,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</p> <p>*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</p>
대주주 판단	<p>○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</p> <p>○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</p> <p>*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</p> <p>○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</p> <p>*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(T+2, 한국거래소 영업일)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</p>
국내외 주식 통산	<p>○ 국내주식과 국외주식(기타자산 등은 제외)을 '22년 상반기에 양도,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</p> <p>* '20.1.1. 이후 국내·국외주식간 손익통산 가능하나,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</p> <p>○ '22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, 국외주식(기타자산 제외)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</p>

구분	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
	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* '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(기타자산 제외)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○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○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,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통 화 명	8월 5일(금)	8월 8일(월)	8월 9일(화)	8월 10일(수)
미 달 러 (USD)	1309.70	1299.30	1304.80	1305.10
일 본 엔 (JPY)	986.22	961.91	967.06	965.77
영 국 파 운 드 (GBP)	1592.99	1567.22	1576.72	1575.84
캐 나 다 달 러 (CAD)	1017.95	1003.98	1014.70	1012.73
홍 콩 달 러 (HKD)	166.85	165.52	166.22	166.26
위 안 화 (CNH)	193.83	192.20	192.73	193.09
유 로 화 (EUR)	1342.44	1322.04	1330.50	1332.31
호 주 달 러 (AUD)	912.60	897.36	911.47	908.15
싱 가 폴 달 러 (SGD)	951.78	940.36	946.57	946.38
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(MYR)	293.79	291.58	292.62	292.95